

예 산 총 칙

제1조 2019년도 예산서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안)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51,204,194	25,536,125
일 반 회 계		793,825,828	23,814,775
특 별 회 계		57,378,366	1,721,350
	기타특별회계	9,495,616	284,868
	의료급여기금	2,951,084	88,533
	수질개선	155,048	4,651
	주민소득지원	817,480	24,524
	기반시설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	-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5,250,157	157,505
	산업단지조성사업	321,847	9,655
	공기업특별회계	47,882,750	1,436,482
	상수도사업	24,055,837	721,675
	하수도사업	23,826,913	714,807

제2조 예산서의 명세는 별첨 "예산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03,565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